

학교 생활 규정

전주문학초등학교

진주문학초등학교 생활규정

제	정	2008. 03. 05	규정	제1호
개	정	2009. 04. 01	규정	제2호
개	정	2011. 07. 19	규정	제3호
개	정	2013. 03. 01	규정	제4호
개	정	2014. 02. 00	규정	제5호
개	정	2015. 02. 00	규정	제6호
개	정	2015. 12. 11	규정	제7호
개	정	2017. 02. 23	규정	제8호
개	정	2018. 02. 06	규정	제9호
개	정	2019. 02. 14	규정	제10호
개	정	2020. 02. 04	규정	제11호
개	정	2020. 12. 23	규정	제12호
개	정	2022. 02. 17	규정	제13호
개	정	2022. 04. 26	규정	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전주문학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 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교무부장, 각 학년 부장, 학부모 대표등을 위원으로 하되, 생활교육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및 기능】

- ① 학생 생활교육 및 징계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 ② 심의 사안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하며, 학생, 학부모는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5조 【기본품행】

1. 학생으로서 기본 예절을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기본질서(정숙.청결)를 생활화한다.
3.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학생은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4.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제6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아니 하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건주인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제8조 【여가활동】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9조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되 다음 각항과 같이 적용한다.

1.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장난감(비비탄, 레이저 포인터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2.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 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부모님의 입회하에 조치를 취한다.
5. 제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학생들이 없는 공간에서 별도로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동성의 교사를 두어 실시한다.
6. 담임교사는 학생의 동의 하에 학생의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을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 【교내 봉사활동】 학생의 교내 봉사활동(일인일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교장은 교내외 봉사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교사와 학생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다.
2.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및 교내 특별구역 봉사활동은 학생의 희망과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정하며 학생은 주어진 봉사 활동의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3. 교내 환경 구성품의 정리 정돈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 봉사한다.
4. 교내 각종 비품 및 기자재의 파손과 분실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임교사나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5, 6학년 선배 학생은 1학년 후배들의 급식 및 청소활동 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 【급식에 관한 권리】 학교장은 급식에 대해 정기적으로 학생 의견을 제출받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제12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교실 외의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2.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등교 후에는 외출을 금하되, 부득이한 이유로 외출을 할 경우

제13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1.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한다.
2. 학생은 보충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14조 【양심의 자유】

1.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 【건강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월 1회 생리 공결이 가능하다.
3.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에 관한 규정 추가
 - ① 모든 학생, 교직원, 방문객은 학교 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
 - ②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1차 규정위반 시 자체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상담을 실시한다.
 - 2차 규정위반 시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협의 후 흡연예방과 금연에 연관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흡연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교직원 및 방문객의 규정위반시 국민건강증진법 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 【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공간에 붙이도록 한다.

제2절 교외 생활

제17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은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본교 학생은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제18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제3절 정보 통신 생활

제19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관련 각종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제20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업 중 컴퓨터는 해당 수업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2.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며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컴퓨터실 사용 후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

제21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1. 학생은 학교에 오면 전자기기(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 등)의 전원을 꺼서 자신의 가방 등에 넣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교사의 허락을 맡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학생은 교사의 허락을 받아 학교에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3. 학생이 시험 중에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제4장 학생 생활 지도

제1절 생활 지도

제22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시 각자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학생은 이용 전 시설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3. 학생들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녹색어머니교통대)가 교통 안전지도를 담당한다.
6.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7. '학생수련활동 실무지침'에 의거 각종 수련활동시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행사 전에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23조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1.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선정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 ① 매일 아침 인사하기
- ② 아침 등교시간 지키기
- ③ 수업시간에 집중하여 공부하기
- ④ 복도에서 우측으로 천천히 걷기
- ⑤ 에너지 절약하기(전기, 물 아껴 쓰기)
- ⑥ 실내화는 실내에서만 신기
- ⑦ 꽃이나 나무 등 식물을 보호하기
- ⑧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나눔과 배려 실천하기
- ⑨ 청소시간에 맡은 구역에 대한 청소를 성실히 하기
- ⑩ 학교 급식은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보조식은 급식실내에서 먹고 처리하기
- ⑪ 교실이나 복도 등에 껌이나 침을 뱉지 않으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 ⑫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 ⑬ 엘리베이터는 탑승증을 소지하거나 위급하다 판단되는 필요 상황일 경우에 탑승할 수 있다.
- ⑭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 등 탈 것을 타고 등하교하지 않기
- ⑮ 등교 후 하교할 때까지 교문 밖을 함부로 나갈 수 없으며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는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나가기 (출입허가증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

2. 제1항 및 기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지키고자 하는 사항을 학생생활협약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제24조 【벌】 체벌은 전면 금지한다.

1.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한 직·간접 체벌은 금한다.
2.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한다.
3. 학교 내에서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부모 동반지도를 병행할 수 있다.

제25조 【교사의 권한 이동】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6조 【훈계 ·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1.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2.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방과 후와 학부모가 동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를 득한 후 실시한다.

- ① 구두주의
- ②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③ 교육환경 제재 조치(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조치, 전담실에서 교실로의 이동조치 등)
- ④ 적정한 수준의 학습과제 부과(봉사활동, 반성문)
- ⑤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귀, 청소명령
- ⑥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⑦ 교감과의 면담
- ⑧ 문제행동 수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교감 입회 하 집중 면담
- ⑨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⑩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학생징계의 원칙과 방법】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1일 1시간 최대 30회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은 생활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구 저이등 기타 정절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② 사회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만약 사회 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0일 이내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 지정,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처벌한다.

④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부모님의 보호, 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는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2.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8조 【징계의 대상】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학습권을 포함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4.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등
5. 학교규칙을 어기는 경우

제29조 【징계 절차】

1. 학생생활규정 위반 사안 발생
생활교육 위반 사실을 담임이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사안의 경중에 대한 구분하여 (경미한 사안->위원회 회부 없이 담임 훈계 및 지속적 상담으로 지도, 중대 사안-> 위원회 회부 후 조치에 따르며 추후 교육 및 상담)징계 및 징계의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2. 사안 진술서 양식(전북교육 2018-220, 71쪽) 사용하여 학생 권리 고지하고 사안 조사시 유의 사항 확인 후 조사보고서 작성한다.
3. 학교장에게 사안 보고, 학부모 상담을 위한 내교 통지(상담 일자, 시간, 내용 기록 추후 유지) 한다.
4.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 심의는 학생의 학칙 위반 행위 및 경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 관련 학생 자료 보강(지도 노력 등 추가 자료 제출)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명기, '위원회 개최' '의견진출(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유선 통화 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6. 사안보고, 가능한 모두(당사자, 참고인, 당사자 학부모)에게 진술기회 부여하고 질의응답, 관련 교사 의견 진술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한다. 7.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하여 학부모 통보하고, 재심 청구 가능 안내, 징계 양정 시 유의사항 준수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8. 조치시행 및 추수지도:
 - ① 1호: 학교 내의 봉사(교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함)
 - ② 2호: 사회 봉사
 - ③ 3호: 특별교육 이수
 - ④ 4호: 출석 정지 및 가정학습(1회 10일, 연간 30일 이내) 중 1개만의 징계를 실시

제30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1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의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5장 생활 규정의 개정

제32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 【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5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6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37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